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52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11.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6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주소]:
<http://corporate.homeplus.co.kr>
homeplus@homeplus.co.kr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 보 공 개 서

홈플러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3459-8000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3459-080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익스프레스 영업부문 가맹지원팀 / 02-3459-8311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52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11.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6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주소]:
<http://corporate.homeplus.co.kr>
homeplus@homeplus.co.kr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 보 공 개 서

홈플러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3459-8000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3459-080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익스프레스 영업부문 가맹지원팀 / 02-3459-831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4 -
II.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현황.....	- 11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7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20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25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43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44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42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46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 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04.20		1999.05.01	조주연, 김광일	02-3459-8000	02-3459-0804
	법인 등록번호	110111-1684037		사업자등록번호		220-81-60348
기 타	• 1999.05 삼성테스코 출범 • 2004.0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호 직영점(중계점) 오픈 • 2010.0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호 가맹점(중곡2점) 오픈 • 2011.03 홈플러스(주)로 회사명 변경 • 2015. 10. TESCO Holdings B.V에서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로 최대주주 변경 • 2019.12.2.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최대주주 홈플러스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 • 2020.2.28 홈플러스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 름	직위	사업 (경영) 기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등기 임원	조주연	대표이사	2024.01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김광일	대표이사	2024.01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김태성	사외이사	2018.02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박태현	기타 비상무 이사	2018.05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차영수	기타 비상무 이사	2019.01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관계	이 름	직위	사업 (경영)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기간				
등기 임원	김정환	기타 비상무 이사	2021.05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김민정	기타 비상무 이사	2024.05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천준호	감사	2024.01 ~ 현재	전화번호	02-3459-8000	팩스번호	02-3459-08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사실은 없으나, 2020.2.28. 홈플러스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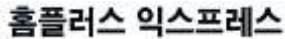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비 고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 업을 합병함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 업을 합병함	해당사항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사항 없음					

※ 기재기간: 바로 전 3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당사 대형할인점의 고유 브랜드인 “홈플러스”와 “익스프레스”를 결합하여 구성한 당사의 슈퍼마켓 고유 브랜드 임.
상 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0000점	해당 지역 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46255-0000 등록번호: 41-0157769-0000
그 밖의 영업표지	HOMEPLUS Wellbeing ⁺	등록번호: 40-0671570-0000 등록번호: 40-0671571-0000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그 밖의 영업표지		등록번호: 41-0146257-0000 등록번호: 41-0148420-0000
		등록번호: 41-0167640-0000
		등록번호: 41-0187577-0000 등록번호: 41-0192519-0000
		등록번호: 41-0189546-0000 등록번호: 41-0187580-0000
		등록번호: 41-0192520-0000 등록번호: 41-0187578-0000
		등록번호: 41-0192066-0000
		등록번호: 4120170023253
		등록번호: 4103898120000
		등록번호: 4015554350000 등록번호: 4015319020000

※ 위 상표(서비스표) 및 영업표지는 홈플러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표) 및 영업표지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표(서비스표) 및 영업표지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9,848,350,146	8,559,175,580	1,289,174,565	6,480,705,208	(133,536,824)	(37,203,714)
2022년	9,095,711,910	8,224,501,997	871,209,912	6,600,588,862	(260,179,079)	(445,843,500)
2023년	8,785,427,473	8,520,139,773	265,287,700	6,931,453,466	(199,418,955)	(574,252,916)

주(1) 당사의 사업연도 해당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2021.3.1 ~ 2022.2.28 / 2022년:2022.3.1 ~ 2023.2.28 / 2023년:2023.3.1 ~ 2024.2.29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위 표의 근거자료는 <별첨 1-1. 재무상태표> 및 <별첨 1-2.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16.5%]입니다.

주(1) 당사의 사업연도 해당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2021년:2021.3.1 ~ 2022.2.28 / 2022년:2022.3.1 ~ 2023.2.28 / 2023년:2022.3.1 ~ 2024.2.29

주(2) 매출액 기준 : 당사 Finance System Sales (Retail Sales Report) 매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조주연	대표이사	2024.01 ~ 현재	대표이사
		부사장	2021.07 ~ 2024.01	마케팅부문
	임기수	전무	2024.02 ~ 현재	Express영업부문
		전무	2022.03 ~ 2024.01	Express사업부문
		상무	2020.06 ~ 2022.02	Express사업부문
		이사	2016.10 ~ 2020.06	Express기획본부
		이사	2016.04 ~ 2016.10	Small Format지원총괄
		이사	2015.04 ~ 2016.03	Small Format지원본부
	남정일	이사	2023.04 ~ 현재	Express영업본부
		이사	2020.10 ~ 2023.04	Express기획본부
		부장	2020.06 ~ 2020.09	Express기획본부
	류순미	이사	2023.08 ~ 현재	Express기획본부
		부장	2023.04 ~ 2023.07	Express기획본부
		부장	2022.05 ~ 2023.04	Express영업지원팀
		부장	2021.02 ~ 2022.05	Express3광역
		부장	2019.12 ~ 2021.02	Express2광역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비관련 임원	임재홍	전무	2024.02 ~ 현재	하이퍼영업부문
		전무	2022.07 ~ 2024.01	영업부문
		상무	2021.06 ~ 2022.06	영업부문
		이사	2021.05 ~ 2021.05	7지역본부
		이사	2020.06 ~ 2021.04	8지역본부
		이사	2019.12 ~ 2020.06	10지역본부
		이사	2018.04 ~ 2019.11	영업본부
		이사	2018.03 ~ 2018.04	9지역본부
	권오경	이사	2022.04 ~ 현재	영업본부
		부장	2021.12 ~ 2022.03	영업본부
	김봉균	이사	2020.07 ~ 현재	신선영업본부
		부장	2020.06 ~ 2020.06	신선영업본부
		부장	2019.12 ~ 2020.06	영업2본부
	정기만	상무	2024.04 ~ 현재	인사기획본부
		상무	2024.03 ~ 2024.03	영업인사본부
		이사	2019.12 ~ 2024.02	영업인사본부
		이사	2019.07 ~ 2019.11	5지역본부
		부장	2018.11 ~ 2019.06	5지역본부
	박태수	이사	2020.06 ~ 현재	1지역본부
		이사	2018.11 ~ 2020.06	8지역본부
		이사	2018.03 ~ 2018.10	4지역본부
	김종원	이사	2023.08 ~ 현재	2지역본부
		부장	2023.04 ~ 2023.07	2지역본부
	송동식	이사	2021.06 ~ 현재	3지역본부
		이사	2020.10 ~ 2021.06	2지역본부
		부장	2020.07 ~ 2020.09	2지역본부
	김홍주	이사	2021.06 ~ 현재	4지역본부
		이사	2021.05 ~ 2021.06	5지역본부
		이사	2020.06 ~ 2021.04	6지역본부
		이사	2019.10 ~ 2020.06	7지역본부
		부장	2019.06 ~ 2019.09	7지역본부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비관련 임원	이 철	상무	2024.03 ~ 현재	안전보건관리부문
		이사	2021.10 ~ 2024.02	5지역본부
		부장	2021.06 ~ 2021.09	5지역본부
	육상진	이사	2024.03 ~ 현재	5지역본부
	이명재	이사	2021.10 ~ 현재	6지역본부
		부장	2021.06 ~ 2021.09	6지역본부
	손용길	이사	2021.10 ~ 현재	7지역본부
		부장	2021.06 ~ 2021.09	7지역본부
	최병두	이사	2021.06 ~ 현재	8지역본부
		이사	2021.05 ~ 2021.06	3지역본부
		이사	2020.06 ~ 2021.04	4지역본부
		이사	2019.07 ~ 2020.06	2지역본부
		부장	2019.06 ~ 2019.06	2지역본부
		부장	2018.11 ~ 2019.05	7지역본부
	황윤식	이사	2022.04 ~ 현재	9지역본부
		부장	2021.12 ~ 2022.03	9지역본부
	박신재	이사	2021.10 ~ 현재	10지역본부
		부장	2021.06 ~ 2021.09	10지역본부
	고영선	전무	2022.01 ~ 현재	Mall사업부문
		상무	2018.07 ~ 2021.12	Mall사업부문
		이사	2018.01 ~ 2018.06	Mall사업본부
	한승희	상무	2023.01~현재	Mall리빙&식음본부
		이사	2019.10 ~ 2022.12	Mall리빙&식음본부
	이태신	전무	2022.02 ~ 현재	온라인사업부문
	조혜영	이사	2022.03 ~ 현재	온라인마케팅본부
	김중윤	이사	2022.03 ~ 현재	온라인MD본부
		부장	2021.09 ~ 2022.02	모바일MD본부
	이정원	이사	2022.03 ~ 현재	온라인플랫폼본부
	김일현	이사	2021.10 ~ 현재	IT본부
		부장	2021.07 ~ 2021.09	IT본부
		부장	2020.03 ~ 2021.07	디지털플랫폼본부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비관련 임원	임경래	상무	2024.03 ~ 현재	상품1부문
		상무	2024.01 ~ 2024.02	신선식품본부
		이사	2021.06 ~ 2023.12	신선식품본부
		부장	2021.03 ~ 2021.05	신선식품본부
	심완섭	이사	2024.03 ~ 현재	신선식품본부
	강경수	이사	2024.06 ~ 현재	베이커리&델리상품본부
		이사	2023.05 ~ 2024.05	베이커리상품본부
	감태규	상무	2024.03 ~ 현재	상품2부문
		상무	2023.03 ~ 2024.02	그로서리상품본부
		이사	2021.09 ~ 2023.02	그로서리상품본부
		이사	2020.08 ~ 2021.08	모바일MD본부
		이사	2019.05 ~ 2020.08	Express상품본부
	조도연	상무	2024.02 ~ 현재	마케팅부문
		상무	2022.07 ~ 2024.01	브랜드본부
		이사	2021.06 ~ 2022.06	브랜드본부
	손주연	이사	2024.06 ~ 현재	데이터CRM본부
	유혜경	상무	2024.06 ~ 현재	리테일경험본부
		상무	2021.11 ~ 2024.05	디자인본부
	황정희	부사장	2022.01 ~ 현재	인사부문
		전무	2019.03 ~ 2021.12	인사부문
	권순범	상무	2023.10 ~ 현재	인사지원본부
		이사	2019.06 ~ 2023.09	인사지원본부
	이순신	이사	2019.07 ~ 현재	감사본부
		부장	2018.03 ~ 2019.06	감사본부
	배 은	전무	2023.03 ~ 현재	경영지원부문
	이현세	상무	2022.01 ~ 현재	재무기획본부
		이사	2018.06 ~ 2021.12	재무기획본부
	유남선	상무	2024.01 ~ 현재	SCM본부
		상무	2022.03 ~ 2023.12	SC기획본부
		이사	2020.11 ~ 2022.02	SC기획본부
		이사	2020.11 ~ 2020.11	영업전략본부
		이사	2018.01 ~ 2020.10	영업혁신본부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비관련 임원	강영수	이사	2021.04 ~ 현재	물류본부
		부장	2020.07 ~ 2021.03	물류본부
	유종현	상무	2024.01 ~ 현재	시설인프라본부
		이사	2022.05 ~ 2023.12	운영지원본부
	이성진	전무	2023.03 ~ 현재	재무관리본부
		상무	2016.06 ~ 2023.02	재무관리본부
	연태준	부사장	2018.09 ~ 현재	대외협력.준법경영부문
		부사장	2016.07 ~ 2018.08	대외협력부문
	정원희	상무	2021.12 ~ 현재	준법경영본부
	김광일	대표이사	2024.01 ~ 현재	-
	김태성	사외이사	2018.02 ~ 현재	-
	박태현	기타비상무이사	2018.05 ~ 현재	-
	차영수	기타비상무이사	2019.01 ~ 현재	-
	김민정	기타비상무이사	2021.02 ~ 현재	-
	김정환	기타비상무이사	2024.05 ~ 현재	-
	천준호	감사	2024.01 ~ 현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 근	비상근	
2024년 2월 29일	45	6	20,04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 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가 맹본부의사 용기간)
	상표권 및 서비스 표권	2006.05.17 출원 2007.03.19 등록	출원: 41-2006-0012487 등록: 41-0146255-0000	홈플러스 스(주)	2027.03.19

명 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가 맹본부의사 용기간)
HOMEPLUS Wellbeing ⁺	상표권 및 서비스 표권	2005.09.03 출원 2006.07.24 등록	출원: 40-2005-0041300 등록: 40-0671570-0000	홈플러스 스(주)	2026.07.24
		2005.09.03 출원 2006.07.24 등록	출원: 40-2005-0041301 등록: 40-0671571-0000		2026.07.2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006.05.17 출원 2007.03.19 등록	출원: 41-2006-0012490 등록: 41-0146257-0000		2027.03.19
		2006.05.17 출원 2007.05.08 등록	출원: 41-2006-0012489 등록: 41-0148420-0000		2027.05.08
		2007.06.20 출원 2008.05.28 등록	출원: 41-2007-0016882 등록: 41-0167640-0000		2028.05.28
		2008.05.14 출원 2009.12.11 등록	출원: 41-2008-0012853 등록: 41-0192519-0000		2029.12.11
		2008.05.14 출원 2009.07.08 등록	출원: 41-2008-0012854 등록: 41-0187577-0000		2029.07.08
		2008.05.14 출원 2009.09.04 등록	출원: 41-2008-0012855 등록: 41-0189546-0000		2029.09.04
		2008.05.14 출원 2009.07.08 등록	출원: 41-2008-0012856 등록: 41-0187580-0000		2029.07.08
		2008.05.14 출원 2009.12.11 등록	출원: 41-2008-0012857 등록: 41-0192520-0000		2029.12.11
		2008.05.14 출원 2009.07.08 등록	출원: 41-2008-0012858 등록: 41-0187578-0000		2029.07.08
		2008.05.14 출원 2009.11.27 등록	출원: 41-2008-0012859 등록: 41-0192066-0000		2029.11.27
		2016.05.24 출원 2017.03.06 등록	출원: 41-2016-0024179 등록: 41-0389811-0000		2027.03.06
		2016.05.24 출원 2017.03.06 등록	출원: 41-2016-0024182 등록: 41-0389812-0000		2027.03.06
		2018.11.23 출원 2019.12.18 등록	출원: 40-2018-0163743 등록: 40-1555435-0000		2029.12.18
		2018.11.23 출원 2019.10.15 등록	출원: 40-2018-0163745 등록: 40-1531902-0000		2029.10.15

당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서
PC 용 : O/S (Operation System) - XP Pro	Microsoft
PC 용 : MS Office 2007 standard	Microsoft
PDA 용 : Window Mobile 5.0	Microsoft
PINE 용 : O/S (Operation System) - Linux	Redhat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서
POS 용 : O/S (Operation System)- XP Embedded	Microsoft
Price Card/ Label 용: POP Plus	RetailTech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현황

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시작한 날 : 2010년 2월 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4년 6월 29일)

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연혁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 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삼성테크코(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승한 알레한드로 루소	2010.02~201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승한, 설도원	2011.03 ~ 201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1	도성환	2013.04 ~ 2015.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1	김상현	2016.01 ~ 201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1	임일순	2017.10 ~ 2021.0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1	연태준	2021.01 ~ 2021.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1	이제훈	2021.05 ~ 2024.0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조주연, 김광일	2024.01 ~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3.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업종

영업 표지	업 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과일, 채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 2. 28			2023. 2. 28			2024. 2. 29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32	78	254	329	76	253	316	72	244
서울	96	24	72	96	23	73	91	20	71
부산	23	1	22	23	1	22	21	1	20
대구	9	-	9	9	-	9	9	-	9
인천	24	9	15	24	9	15	24	9	15
광주	-	-	-	-	-	-	-	-	-
대전	17	6	11	18	6	12	18	6	12
울산	3	-	3	3	-	3	3	-	3
세종	-	-	-	-	-	-	-	-	-
경기	129	32	97	126	31	95	121	30	91
강원	1	-	1	1	-	1	1	-	1
충북	7	2	5	6	2	4	6	2	4
충남	6	1	5	6	1	5	6	1	5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5	2	3	5	2	3	4	2	2
경남	11	-	11	11	-	11	11	-	11
제주	-	-	-	-	-	-	-	-	-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점포수는 당사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점포수 임.

- 2021년 : 2021.3.1 ~ 2022.2.28 / 2022년 : 2022.3.1 ~ 2023.2.28 / 2023년 : 2023.3.1 ~ 2024.2.29

5. 바로 전 3년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2	-	-	4	11	78
2022	78	-	-	2	17	76
2023	76	1	-	5	17	7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의 점포수는 당사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점포수 임.

- 2021년 : 2021.3.1 ~ 2022.2.28 / 2022년 : 2022.3.1 ~ 2023.2.28 / 2023년 : 2023.3.1 ~ 2024.2.29

* 가맹점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초 : 해당 년도의 3월 1일자 가맹점포수
- 신규 개점 : 해당 년도에 신규로 개점 및 운영 중인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양수한 가맹점포수
- 계약 종료 : 해당 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
- 계약 해지 : 해당 년도에 계약기간 중 폐점 및 가맹본부에게 직영점으로 양도한 가맹점포수
- 명의 변경 : 해당 년도에 기존 운영점포에 대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간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점포수
- 연 말 : 해당 년도의 2월 말일자의 가맹점포수

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사업자 한 명이 2023년(2023년 3월 ~ 2024년 2월)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6개월 이상 운영한 71점포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 입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 역	2024.2.29 사업연도 가맹점 수	2024.2.29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 체	72	2,470,558	27,175	6,276,081	77,905	969,224	8,315	6개월 미만 1개점
서 울	20	2,805,475	28,988	6,276,081	64,850	1,326,712	8,315	
부 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 구	-	해당없음						
인 천	9	2,050,361	24,390	2,408,329	35,042	1,571,712	17,755	
광 주	-	해당없음						
대 전	6	1,927,349	26,478	4,000,511	43,512	969,224	13,710	
울 산	-	해당없음						
세 종	-	해당없음						
경 기	30	2,679,786	29,472	5,679,979	77,905	1,150,001	11,242	
강 원	-	해당없음						
충 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충 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 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 남	-	해당없음						
경 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경 남	-	해당없음						
제 주	-	해당없음						

* 2023년 사업연도: 2023.3.1 ~ 2024.2.29(영업일수는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당사 Finance System Sales (Retail Sales Report)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2024년 01월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수원연무점)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72개가 아닌 실제 71개 가

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2	1,264일(3년5개월)

* 2023년 사업연도 말 : 2024.2.29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본사 익스프레스 가맹지원팀에서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2]쪽을 참고 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80,109	1,180,109	-	
광고	소계	연중	326,256	326,256	-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소계	연중	853,853	853,853	-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연중	-	-	-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 2023년 사업연도: 2023.3.1 ~ 2024.2.29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아래 II-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계약자	홈플러스(주)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포함
보험기간	• 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종료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예치가맹금 범위 내	-
지급조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치가맹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접수 →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검토 → 보험금 지급	-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220-81-60348 홍플러스(주)	피보험자	홍플러스텍스트프레스
보험가입금액	全 壹仟萬 圓整 ₩10,000,000-	보험료	₩15,000-
책임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계약금액 납부일 중 먼저 5년 또는 납부한 가맹계약체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계약종료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치가맹금 반환 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어음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회사는 책임보험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예치가맹금 반환요구를 하여야 모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주계약내용	[가맹사업내용]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090100526 영업표지 홍플러스텍스트프레스 예치가맹금액 ₩10,000,000- 계약체결일자 2018년 09월 13일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 발급	자명	
	대리인	

2018년 09월 13일
SGI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로 20(연지동, 서울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김상택



대한민국 정부 공시제 200명
중소기업주주
인쇄 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 (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rated
Fitch Ratings

한국재무보증평가
신용보증평가
(신용보증평가인증기관)

후면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청구취지 및 내용	확정일자	판결내용
000	당사	당사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신뢰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가 원고에게 157,753,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2022. 6. 3.	당사는 원고에게 26,166,504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비용부담 대상		예치 여부
		F1 Type	F2 Type	
개점 비용 (A)	점포 임차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49% 가맹점사업자 51% ⁽¹⁾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 보험을 체결하 였으므로, 금융 기관에 예치하
	점포 내·외장 공사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49% 가맹점사업자 51% ⁽¹⁾	

구 분		비용부담 대상		예치 여부
		F1 Type	F2 Type	
개점 비용 (A)	영업용 판매장비 · 설비 · 비품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49% 가맹점사업자 51% ⁽¹⁾	지 아니하고 당 사에 직접 지급 합니다.
가 맹 투자비	가맹비 (B)	가맹점사업자 (1,000)	가맹점사업자 (1,000)	
	가맹비 부가세	100	100	
	가맹 보증금 (C)	가맹점사업자 (15,000)	가맹점사업자	
	상품 보증금 (D)	가맹점사업자 (3,000)	가맹점사업자 (3,000)	
	소모품 준비금	가맹점사업자 (700)	가맹점사업자 (700)	
투자비 총 계	가맹본부	개점 비용 100%	개점 비용의 49%	
	가맹점사업자	가맹 투자비 100% (19,800)	개점 비용의 51% (B+C+D) + 800 ⁽²⁾	

주(1) 개점 비용(A)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51%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투자비 중 일부로 부담합니다. 즉, 개점 비용의 51% = 가맹비(B) + 가맹 보증금(C) + 상품 보증금(D)

주(2) 가맹비 부가세(100만원) + 소모품 준비금(700만원)

1) 가맹 투자비를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미 반환 사유
가맹비	1,000	가맹 계약 체결일에 납부	미 반환	• 개점 및 영업을 위한 일체의 본부지원 에 대한 대가로 소멸되는 비용. 단, 개점 전 계약해지 시 에는 반환됨.
상품 보증금	3,000	초도 상품 입고일 까지 납부 ⁽¹⁾	계약종료 시 정 산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반환	• 공급받는 상품대금 등에 대한 채무액 을 담보하기 위한 대가
소모품 준비금	700	초도 상품 입고일 까지 납부 ⁽¹⁾	계약종료 시 정 산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반환	• 가맹점에 소모품으로 공급되는 비용 (점포개점 개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가맹비 부가세	100		환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금액 반환
총 계	4,800	-	-	-

주(1) 지급금액 및 지급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 투자비 중 가맹 보증금은 점포 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비용 및 가맹계약에 의거한 가맹점사업자의 성실한 가맹점 운영을 보증하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시
잔액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귀하가 당사에 대한 채무금이 있

을 경우 채무금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없음)

구 분	Type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사업자의 귀책 사유	비 고
가맹 보증금	F1 Type	15,000	초도상품 입고일 까지 분할 납부 ⁽²⁾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금, 점포 판매액 미송금 발생,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등 기타사유	-
	F2 Type	개점 비용 ⁽¹⁾ 의 51% 중 가맹비 및 상품 보증금을 제외한 잔여액			-

주(1) 점포 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비용 총 금액(위 1.의 (A))

주(2) 지급금액 및 지급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납부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납부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가맹 투자비(위 1) 가맹비, 상품 보증금, 소모품 준비금 및 2) 가맹 보증금)의 총계와 같습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가맹금은 다음과 같이 당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Type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총 액
금 액	F1 Type	1,000	9,000	9,800	19,800
	F2 Type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액	개점 비용의 51% + 800
납 부 기 한	-	가맹계약 체결일	당사의 점포 내·외장 공사개시일	초도 상품입고일	기한 내 납부

※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은 1,000만원 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7,540+ a	537+ a			
점포 내·외장 공사 비용	시공업체	20,800	297	오픈 당일	공사 전 계약취소	231㎡(70py) 기준 ㎡ 기준별 비용상이
영업용 판매장비 · 설비·비품 비용	협력업체 외 5개사	14,600	209	오픈 당일	공사 전 계약취소	231㎡(70py) 기준 ㎡ 기준별 비용상이
VMD	협력업체 외 2개사	2,140	31	오픈 당일	공사 전 계약취소	

※ 정보공개서 작성일 현재 당사와 계약된 시공업체는 없습니다. 추후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 입니다.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비 고
인·허가 비용	담배조합비		협력업체	약 8~9만원	영업개시 이전	담배소매인 지정시
	전기명의변경		협력업체	약 6만원		개별전기 사용점포에 한함
	사업자등록신청	관할 세무서		약 1.2만원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본사 익스프레스 가맹지원팀 (02-3459-8311)	해당지역 개발담당자 상권조사 → 우량입지 선정 → 상권분석 → 출점 타당성 검토 → 승인 → 점포 임대차계약 → 가맹희망자 점포선택

※ 단, 선정기준은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및 점포의 운영에 관여하게 될 사람(2명 이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 일 것
종업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에서 근무할 종업원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 후 당사에 추천한 자	특별한 기준 없음. 단, 종업원 채용 및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외장 공사, 설비·집기·영업 비품은 당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귀하께서 당사로부터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당사에서 지원하는 내·외장 공사, 설비·집기·영업비품 및 귀하께서 구입하셔야 하는 소모품 내역은 별첨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영업 중에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건물 관리비	임대인	실비용	매월 말일	미반환	사용	정액+실비
수도·광열비	협력업체	실비용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본부 50%지원
마케팅 비용	홈플러스 (대납)	실비용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수익배분율

손해배상보험료	보험사 선택	실비용	계약일	미반환	사용	-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강도안심상해보험료	보험사 선택	실비용	계약일	미반환	사용	-
보수 교육비(종업원)	홈플러스	10~3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시설등 유지·보수비	홈플러스 (대납)	120~17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파손, 부품교체
통신비 (전화료, 전용선포함)	홈플러스 (대납)	550~65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보안 경비비	홈플러스 (대납)	150~18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정수기 대여료	협력업체	30~40	익월15일	미반환	수수료	-
배달비	홈플러스 (대납)	2,900~3,00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비품 구입비(1년이상)	지정 구입처	실비용	즉시지급	미반환	사용	직접구입
각종 소모품비	홈플러스 (대납)	230~30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쓰레기 처리비	지정 구입처	실비용	즉시지급	미반환	사용	-
청소용품 구입비	홈플러스	실비용	즉시지급	미반환	사용	직접구입
유니폼비	홈플러스	10~30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신용카드 수수료	홈플러스	실비용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신용카드 발생 수수료의 54% 지원
세무수수료	협력업체	실비용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세무신고 대행료
상품 행사비	홈플러스	실비용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수익배분율
상품구매 수수료	홈플러스	실비용	익월15일	미반환	사용	-
은행 수수료	거래은행	실비용	즉시지급	미반환	사용	-
지연이자	홈플러스	연12~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반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점포환경개선비용	홈플러스	가맹본부 부 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익월 15일	미반환	사용	VIII. 1. 참조

※ 점포 운영 시 상기 항목 외 별도 비용발생 가능하며, 물가변동 및 기타사유 등으로 금액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 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 준 :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 : 2023.3.1 ~ 2024.2.29

3)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이익배분금

① 이익배분금 = 월 순매출 총이익 X 이익배분율

② 가맹본부의 이익배분율

해당 월 순매출 총이익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배분율	반환조건	비 고
• 5,975만원 미만 : 54% • 5,975만원 이상 ~ 6,675만원 이하 : 55% • 6,675만원 초과 ~ 7,380만원 이하 : 56% • 7,380만원 초과 ~ 8,083만원 이하 : 57% • 8,083만원 초과 ~ 8,783만원 이하 : 58% • 8,783만원 초과 ~ 9,583만원 이하 : 59% • 9,583만원 초과 ~ 10,483만원 이하 : 60% • 10,483만원 초과 : 61%	이익배분금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이미지 및 당사의 제반 영업지원에 대한 대가 이므로 반환불가	※ 월 순매출 총이익 = 월 총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부가세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5) 경업금지 기간

귀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운영하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타 브랜드의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등의 소매점에 종사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제3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지위를 가맹사업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계약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가맹계약 이행을 위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불가항력 또는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사업중단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나, 그 외 당사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액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본 정보공개서 V. 5.항 4)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조치사항은 아래 5)항의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과 동일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의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귀하가 사망, 질병·재해·상해·사고 등에 따른 중대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극히 곤란하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계약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 등

귀하는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발설·공표하거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미지 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시스템과 동일·유사·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업적 징표·경영시스템·영업형태·점포시설 및 외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그 밖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영업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귀하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종료와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며, 귀하는 청산수속이 빨리 진행되도록 당사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조치 사항	조치 내용	계약서 조항
점포 등의 점유 및 실재고 조사	당사는 가맹계약 종료와 동시에 점포 건물 내에 출입하여 점포설비, 상품, POS기 내의 현금 등을 점유 관리할 수 있고, 실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49조

원상회복	①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먼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폐점시키고 즉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한 후 당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시스템에 관한 문서, 자료, 기타 영업기밀에 속하는 모든 정보, 서류, 서식, 용구 등을 당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제50조
조치 사항	조치 내용	계약서 조항
원상회복	합니다. ii) 당사로부터 대여받은 설비·집기·비품 등 일체의 설치물 또는 물품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수리를 요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설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 또는 당사의 장부상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iii) 점포 운영을 위하여 귀하 명의로 취득한 일체의 인·허가를 즉시 말소하고, 귀하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 기타 계약 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관계를 즉시 종료한 후 그 증빙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청산이 완료됨과 동시에 당사는 귀하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보증금 및 가맹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단, 청산시점에 귀하의 채무액이 잔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품보증금 및 가맹보증금에서 잔존 채무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
회계규정의 폐쇄	① 당사는 원상회복, 담보 물건의 처분, 기타 계약종료에 따른 일체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모든 채권·채무를 기장하고, 마감수속을 거쳐 당사와 귀하 간의 회계규정을 폐쇄합니다. ② 당사는 회계규정을 폐쇄한 후 적절한 기한 내(2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에 최종 정산서, 손익계산서, 채권채무 현황표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③ 당사는 위 ②항의 자료에 대하여 귀하의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귀하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단, 귀하의 비협조, 의무의 불이행 등 귀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계약종료에 따른 제반 후속 처리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1조
계약종료에 따른 양도양수	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양도양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지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사가 지정하는 신규 가맹점주에게 그대로 승계시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의 재고상품과 관련한 유효기간, 품질미달, 파손 등 상품의 처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양도양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③ 귀하와 신규 가맹점주와의 관계는 귀하와 신규 가맹점주와 사이에 체결하게 되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51조 의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상품·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사업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상품·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주(1) 개별 상품의 종류, 특성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2)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선으로부터만 매입한 상품·용역	가맹본부가 공급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통보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품의 판매중지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 갱신거절 또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함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만19세 미만의 고객	· 청소년 유해약품 · 주세법에 의한 주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 · 청소년 유해매체(성인지 등)로 법률로 지정된 상품·용역	판매금지	· 법률규정에 따른 처벌 · 가맹계약 갱신거절 또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함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 고
전 상품·용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표준판매가격	· 1일 1회 전산 가격자료 UP DATE · 수시 열람	· 가맹점사업자가 표준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가맹본부에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함.

4) 상품의 매입방법

귀하의 상품매입은 당사의 자동발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귀하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점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수동발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통지가 당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수동발주로 전환되며, 수동발주를 선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자동발주로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상기 영업지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이 제한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독립적 배타적 상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단, 도로, 산, 하천, 터널 등과 같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재설정함)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합의 성립)→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 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	www.homeplus.co.kr	과일, 채소, 쌀/잡곡, 정	상품별 입수 및 판

	지마켓	www.gmarket.co.kr	육, 계란, 과자/디저트/ 라면/면류, 간편식, 햄/ 어묵, 통조림	매단위 등이 상이 할 수 있고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발생
	옥션	www.auction.co.kr		
	11번가	www.11st.co.kr		
	배달의민족	www.baemin.com		
	네이버	www.naver.com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5.4%	74.7%	8.6%	1.4%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주(1) 당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용상품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으며, 상품 수는 매월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 계약기간 및 갱신 기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 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 15일 이내

예 → B, 아니오 → 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 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예 → B, 아니오 → A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의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투자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1)항
0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제38조 (2)항
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매출증대를 위해 취득한 상품판매 허가(담배, 주류 등) 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운영하 기 위해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가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제38조 (3)항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기법이나 서비스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8조 (4)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 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5)항
0 가맹본부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제38조 (6)항

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포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의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당사로부터 서면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38조 (7)항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제38조 (8)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관련 계약 조문
0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 귀하가 개점 전 교육 (최초 교육 및 재교육) 모두를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재 교육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일정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맹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일정한 해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0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개점일 7일전까지 서면통보함으로써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해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제11조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0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 관계 법령 등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사의 해지통보서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에 가맹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해약금은 없습니다.	제39조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0 점포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쌍방에 대해 불이익이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쌍방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서 상 특정된 월 마지막 날(단, 신규가맹점주가 해당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에 해지됩니다. 단, 해약금은 없습니다	제40조 (1)항 본문
0 당사의 월 수익 또는 귀하의 월 수익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당사 또는 귀하가 해지사유 및 해지의사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40조 (1)항 단서 (귀하도 동일함)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관련 계약 조문
0 가맹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재해, 상해, 사고 등에 따른 중대한 신체상의 장애로 점포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게 해지의사를 서면통보하여 당사가 확인한 경우	당사의 해지통보서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에 가맹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가맹사업자 사망의 경우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된 경우는 자동해지) 단, 해약금은 없습니다.	제40조 (2)항

0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가 점포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당사의 해지통보서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에 가맹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0조 (3)항
0 위 사유 외의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일정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당사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액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0 귀하에게 파산(자기 파산 포함)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일정한 해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 (1)항 ①호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제43조 (1)항 ①호)
0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제42조 (1)항 ②호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제43조 (1)항 ②호)
0 천재지변, 귀하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점포를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2조 (1)항 ③호
0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당사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일정한 해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 (1)항 ④호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관련 계약 조문
0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됨.	당사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일정한 해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 (1)항 ⑤호

0 귀하가 가맹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제42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됨		제42조 (1)항 ⑥호
0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 점포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2조 (1)항 ⑦호
0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2조 (1)항 ⑧호
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2조 (1)항 ⑨호
0 귀하가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중요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경영을 태만히 한 경우	당사가 2개월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의 해지통보서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에 가맹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일정한 해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 (2)항 ①호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관련 계약 조문
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당사가 2개월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가맹	제42조 (2)항 ②호
0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재고 조사” 또는 “입점조사” 를 거부한 경우		제42조 (2)항 ③호
0 귀하가 당사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회계규정에서 정한 채권채무계정(별지5. (2)항 ⑧호) 중 당사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제42조 (2)항 ④호

0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 양도, 기타 처분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의 해지통보서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에 가맹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일정한 해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 (2)항 ⑤호
0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 (2)항 ⑥호
0 귀하가 기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42조 (2)항 ⑦호, 제6조 (5항), 제17조 (4)항 등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제43조 (2)항 ②호)

위 표의 ‘관련 계약 조문’ 란에서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으로 기재된 사항 외에 귀하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해지절차	관련 계약 조문
0 당사가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지원, 최저수익 보장 지원,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2개월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당사에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의 해지통보서가 당사에 도달한 날에 가맹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일정한 해약금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3조 (2)항 ①호
0 당사가 기타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43조 (2)항 ②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맹계약의 각 조항의 내용이 사회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또는 계속되는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체계의 변화 등에 의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계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는 귀하와 상호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제53조 참조). 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맹계약 내용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귀하의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귀하가 사망, 질병·재해·상해·사고 등에 따른 중대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극히 곤란하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익보장 지원금 중단,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불가 단, 계약종료에 따른 채권·채무만 피 상속인에게 상속 됨.	계약종료에 따른 청산목적의 채권·채무	상속절차	법률규정에 따름
대리행사	당사의 사전 승인 시 가능	점포영업 관련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하는 범위 내의 권리, 의무	• 가맹사업자와 수탁자(점장)간의 별도 합의 필요	-
업무위탁	당사의 사전 승인 시 가능	점장의 업무	• 가맹사업자와 수탁자(점장)간의 별도 합의 필요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운영하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영업상의 비밀보호 및 점포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포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타 브랜드의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등의 소매점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08시 ~ 24시	365일	문의: 익스프레스 가맹지원팀 (02-3459-744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관련 법령 및 조례 포함)에 따른 관할 관청의 영업시간 제한 및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이 지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일수를 연중 영업일수로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으며,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약갱신거절, 최저수익 보장 지원금 중단 등의 사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제한 없음	직접 근무	가맹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 기타 당사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인력	가맹사업자의 부재 시 당사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 및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이익배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 하셔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1)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시스템, 당사의 경영 노하우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지득한 영업비밀

2) 영업비밀 기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이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을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발설, 공표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위반시의 제재

당사의 홈페이지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시스템 경영노하우,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당사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홈페이지 익스프레스 가맹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익스프레스 가맹계약 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가맹계약 위반 시 위약금 내역

계약 해지 사유	부담내역	관련 계약 조문
0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 귀하가 개점 전 교육 (최초 교육 및 재교육) 모두를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재 교육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일정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① 해약금 10,000,000원 ② 경영주 요청으로 인한 해지시 가맹비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은 공제하고 반환.	제9조, 제10조, 제11조
0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제11조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0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 관계 법령 등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금 없음.	제39조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0 점포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쌍방에 대해 불이익이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쌍방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40조 (1)항 본문
0 당사의 월 수익 또는 귀하의 월 수익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당사 또는 귀하가 해지사유 및 해지의사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40조 (1)항 단서 (귀하도 동일함)
계약 해지 사유	부담내역	관련 계약 조문
0 가맹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재해, 상해, 사고 등에 따른 중대한 신체상의 장애로 점포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게 해지의사를 서면통보하여 당사가 확인한 경우	해약금 없음.	제40조 (2)항
0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가 점포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됨으로써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		제40조 (3)항

0 위 사유 외의 귀하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직전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영업기간)의 상대방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3개월분 ② 회사의 회계장부상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단, 점포의 영업이 재개(직영, 프랜차이즈를 불문함)된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중 영업이 재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은 경영주에게 반환	제41조 (당사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	--	-------------------------------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2개월의 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시정요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귀책당사자의 부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부담내역	관련 계약 조문
0 귀하에게 파산(자기 파산 포함)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① 직전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영업기간)의 회사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3개월분	제42조 (1)항 ①호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제43조 (1)항 ①호)
0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② 회사의 회계장부상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③ 위약금은 초과하는 손해가	제42조 (1)항 ②호 (귀하도 동일한 내용의 해지권이 있음, 제43조 (1)항 ②호)
계약 해지 사유	부담내역	관련 계약 조문
0 천재지변, 귀하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점포를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점포의 영업이 재개(직영, 프랜차이즈를 불문함)된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중 영업이 재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은 경영주에게 반환	제42조 (1)항 ③호

0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① 직전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영업기간)의 회사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3개월분	제42조 (1)항 ④호
0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됨.	② 회사의 회계장부상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③ 위약금은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점포의 영업이 재개(직영, 프랜차이즈를 불문함)된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중 영업이 재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은 경영주에게 반환	제42조 (1)항 ⑤호
0 귀하가 가맹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제42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됨.		제42조 (1)항 ⑥호
0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 점포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2조 (1)항 ⑦호
계약 해지 사유	부담내역	관련 계약 조문
0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① 직전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영업기간)의 회사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3개월분 ② 회사의 회계장부상 내.외	제42조 (1항) ⑧호

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③ 위약금은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점포의 영업이 재개(직영, 프 랜차이즈를 불문함)된 경우에 는 경영주가 지급한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중 영업 이 재개된 이후의 기간에 해 당하는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은 경영주에게 반환	제42조 (1)항 ⑨호
0 귀하가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중요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경영을 태만히 한 경우		제42조 (2)항 ①호
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营业을 중단한 경우		제42조 (2)항 ②호
0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재고 조사” 또 는 “입점조사” 를 거부한 경우	직전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영업기 간)의 회사의 월 평균 이익배 분금의 3개월분	제42조 (2)항 ③호
0 귀하가 당사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회계규정 에서 정한 채권채무계정(별지5. (2)항 ⑧호) 중 당사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의 회계장부상 내.외 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제42조 (2)항 ④호
0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계약상의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 양도, 기타 처분한 경우	③ 위약금은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점포의 영업이 재개(직영, 프 랜차이즈를 불문함)된 경우에 는 경영주가 지급한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 중 영업 이 재개된 이후의 기간에 해 당하는 내.외장 시설공사비 잔존가액은 경영주에게 반환	제42조 (2)항 ⑤호
0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관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 (2)항 ⑥호
0 귀하가 기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42조 (2)항 ⑦호, 제6조 (5항), 제17조 (4)항 등 (귀하도 동 일한 내용의 해지권 이 있음, 제43조 (2) 항 ②호)
계약 해지 사유	부담내역	관련 계약 조문
0 당사가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지원, 최저수의 보장 지원,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1년간(영업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영 업기간)의 경영주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3개월분	제43조 (2)항 ①호
0 당사가 기타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 우	②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제43조 (2)항 ②호

	청구할 수 있다.	
--	-----------	--

- 2)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운영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4)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정산금 등 채무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본사 부담	소요 기간	소요 비용
가입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시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사업설명회 방문,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조건 안내	방문 시	없음
가맹기획	• 당사 양식의 가맹희망 지원서 제출	작성 시	없음
심사	• 가맹희망자의 투자능력, 기대수익, 희망지역, 적성 등 심사	지원서 제출 후	없음
현장 상담	• 점포현장 설명 및 상권 확인	심사 통과 후	없음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 점포 후보지 검토 후 개점의사 있을 시 정보 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14일 전 까지	없음
구 분	본사 부담	소요 기간	소요 비용
가맹금 예치 (납부) 및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계약금 수령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후	10,000

	공개서 제공 후 7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점포공사 착공	• 점포공사 착공	D-29	90,000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및 제반 인허가 완료	D-25 완료	개별 부담
교육훈련 실시	• 점포운영 교육	D-15 완료	없음
종업원채용, 교육	• 종업원 직무교육	D-7 완료	없음
설비, 상품인도	• 상품반입 및 진열 개시	D-5	정산 후 잔액
상품 진열	• 상품 진열 완료	D-1	없음
잔돈 준비	• 환전준비금 준비	D-1	500~1,000
점포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없음

위 표에 따른 절차 및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절차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 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는 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결함으로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진열 인원 파견 및 할인행사, 판촉행사 지원	전 오픈점 해당	오픈 시	점별 지원상황에 따라 상이	
반품지원	시즌행사(명절선물세트)	시즌행사 상품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 상품에 한함	시즌행사 종료 후 일정기간 내	반품지원 품목 지정 상품 한정	

3. 경영활동 자문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점포 경영지도	○ 신상품 안내, 상품판매 동향 및 점포경영 분석자료 등 점포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 수시 제공 ○ 슈퍼마켓의 소매가격으로써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표준판매가격 제시 ○ 가맹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매출향상을 위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개별적 조치	○ 가맹점에 가맹본부의 사원을 순회시켜 점포의 상품구색·진열 및 판매상황 등을 관찰하고 지도·조언을 제공	가맹본부 부담	문의:가맹지원팀 (02-3459-7028)

4.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최저수익 보장 지원	가맹점 운영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 보존	최저수익 보장 지원 가이드 충족시	가맹계약 기간	매출 구간별 최저수익 금액 미달액	
수도.광열비 지원 지원	가맹점 운영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 보존	-	가맹계약 기간	실 사용 수도.광열비 50%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가맹점 운영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 보존	-	가맹계약 기간	신용카드 발생 수수료의 54% 지원	
채고손실 지원	상품 매가 인하판매 및 폐기상품 손실에 따른 채고손실 지원	-	가맹계약 기간	순매출 × 1.5%한도(년도별 차등)	
채고 실사 수수료	경영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물조사 비용 지원	-	가맹계약 기간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채고실사 비용	
운영장려금 지원	가맹점 운영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 보존	-	가맹계약 기간	운영경비의 50% 범위 내 차등	
영업 지원 (운영자문)	효율적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 지원	-	가맹계약 기간	필드컨설턴트를 통한 점포순회 지도(경영 컨설팅 제공)	
물류비용	가맹점 운영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 보존	-	가맹계약 기간	상품배송 등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BGM, 방역서비스	효율적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 지원	-	가맹계약 기간	음원, 방역 서비스	
광고.판촉비	효율적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 지원	-	가맹계약 기간	각종 매체광고 비용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에 대한 점포 개점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가 당사로부터 받드시 교육 수료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가맹 자격이 부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개점 전 교육

구 분	직무이론/실습	점포현장 실습(OJT)	과정 정리
내 용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개요 • 상품매입, 진열, 판매, 관리방법 • 각종 장표·서류의 작성 및 회계방식 • POS 시스템 조작, 활용 • 고객서비스 • 법정교육(안전, 위생,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기타 점포 운영방법	• 매장 현장실습	• 과정평가 • 수료식
일 수	[7]일간	[10]일간	[1]일간
	[18]일간		
구 분	직무이론/실습	점포현장 실습(OJT)	과정 정리
장 소	당사의 지정 교육장	당사의 지정 점포	본사

2)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대한 개점 전 교육

구 분	직무이론/실습	점포현장 실습(OJT)
내 용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 개요 • 상품매입, 진열, 판매, 관리방법 • POS 시스템 조작, 활용 • 고객서비스 • 급여, 복리후생 교육 • 법정교육(안전, 위생, 성희롱 예방 교육)	• 매장 현장실습
일 수	[3]일간	[5]일간
	[8]일간	
장 소	당사의 지정 교육장	당사의 지정 점포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대상자	최소 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 고
개점 전 교육	가맹점사업자	18일	당사 부담	-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8일		-

3. 교육·훈련의 주체

- 1)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에서 근무할 종업원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 후 당사에 추천한 자를 말한다)이 직접 받아야 하며,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의 사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귀하가 당사가 제시하는 일정수료기준(위 1.항 1)호의 모든 교육과정 이수 및 위 1.항 1)호의 각 과정평가 상 100점 기준으로 종합평균 80점 이상 취득)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1회에 한하여 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 귀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운영에 관여하게 될 사람(2명 이내)을 지정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귀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일수는 당사 또는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위 1.항 1)호의 최초 교육과정 및 재교육과정 모두를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재 교육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일정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가맹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에 금 일천만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점포명	소재지
1	강원도	무실점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0
2	경기도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30, 104
3	경기도	탄현 2 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17 번길 9
4	경기도	풍동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40 유진프라자
5	경기도	탄현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23
6	경기도	과주와동점	경기 과주 와동 와석 순환로 427
7	경기도	금촌점	경기도 과주시 금빛로 4-1
8	경기도	고양정발산 2 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19
9	경기도	고양중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 1 로 14
10	경기도	고양중산 2 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9
11	경기도	고양정발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50
12	경기도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98
13	경기도	고양행신 2 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42
14	경기도	고양토당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35 번길 12-3
15	경기도	고양화정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05, 102
16	경기도	남양주진접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3 로 51
17	경기도	의정부호원점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81
18	경기도	동두천지행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0
19	경기도	남양주별내 2 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3 로 64-7
20	경기도	인창점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76 번길 42
21	경기도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46
22	경기도	도당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94
23	경기도	부천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53
24	경기도	북변점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7
25	경기도	김포고촌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10 지상 1 층
26	경기도	장기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 로 51 번길 40
27	경기도	김포장기 2 점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26
28	경기도	김포고창점	경기 김포 장기 5132-4 지상 1 층
29	경기도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시흥로 170
30	경기도	부천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31	경기도	부천상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 번길 14-22
32	경기도	부천중동 2 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 번길 52
33	경기도	부천상동 2 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1 번길 18-3
34	경기도	부천중동 4 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35	경기도	시흥정왕 2 점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14 번길 30
36	경기도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3 번길 17
37	경기도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82
38	경기도	시흥월곶점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90
39	경기도	안산월피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31 지하 1 층
40	경기도	안산와동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 로 6

연번	지역	점포명	소재지
41	경기도	안산월피 2 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68
42	경기도	안산중앙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89
43	경기도	안산고잔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 4 길 15
44	경기도	시흥배곧점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 번길 19-13 1 층
45	경기도	소하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00
46	경기도	광명하안점	경기 광명 하안동 안현로 35
47	경기도	광명하안 2 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61
48	경기도	광명점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28
49	경기도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91
50	경기도	군포수리산역점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380-1, 110
51	경기도	의왕포일점	경기 의왕 포일 664
52	경기도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7
53	경기도	안양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89
54	경기도	군포오금점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405
55	경기도	군포부곡점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28 번길 37-12
56	경기도	안양석수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88
57	경기도	푸른마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55
58	경기도	분당정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8
59	경기도	수진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0
60	경기도	분당서관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2
61	경기도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39
62	경기도	서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82
63	경기도	성남북정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로 41
64	경기도	성남금광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61
65	경기도	수내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3 번길 11
66	경기도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2
67	경기도	분당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75
68	경기도	분당동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9
69	경기도	용인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4
70	경기도	수원신영통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 번길 20
71	경기도	용인구성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 3 로 28 번길 24 번
72	경기도	신갈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16 번길 3-16
73	경기도	수원영통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514
74	경기도	용인풍덕천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2
75	경기도	용인보정 2 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2
76	경기도	상현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20 SR 프라자지하 1 층
77	경기도	상갈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11
78	경기도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79	경기도	수원권선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5 번길 73
80	경기도	수원정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6
81	경기도	화서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35 번길 6
82	경기도	수원오목천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95
83	경기도	화성반월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22
84	경기도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85	경기도	동탄 2 점	경기 화성 반송 858 동탄택지지구
86	경기도	동탄 3 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42

연번	지역	점포명	소재지
87	경기도	화성능동점	경기도 화성시 남여울 3길 4
88	경기도	태안점	경기도 화성시 병점 2로 65
89	경기도	오산세교점	경기 오산 수청로 193
90	경기도	평택청북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 332
91	경기도	평택서정점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 25
92	경기도	안성공도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93	경남	진영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9번길 39
94	경남	거제상동점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 1길 15-3
95	경남	김해삼계점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254
96	경남	호계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198-2
97	경남	석전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 8길 10
98	경남	김해어방점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7, 102
99	경남	신안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70
100	경남	창원남양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45
101	경남	거제고현점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35
102	경남	마산양덕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울림교로 12
103	경남	삼호점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로 74
104	경북	경주안강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 4길 2
105	경북	구미인의점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1길 76
106	대구시	용산 2 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지로 27
107	대구시	도원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로 36
108	대구시	용산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220
109	대구시	감삼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83
110	대구시	월성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7
111	대구시	대구구암 2 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32길 6-10
112	대구시	대구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7길 19
113	대구시	대구화원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43길 27
114	대구시	대구침산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80-4
115	대전시	유천점	대전광역시 중구 평촌로 58, 101
116	대전시	대전송촌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15
117	대전시	대전오류점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8
118	대전시	대전노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8, 110
119	대전시	괴정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57
120	대전시	반석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로 52
121	대전시	월평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
122	대전시	용문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8
123	대전시	대전관저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71, 133
124	대전시	대전도안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11-6
125	대전시	봉명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8
126	대전시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5(탄방동 732) 그랑수아빌딩 1층
127	부산시	구남점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128	부산시	다대포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 2길 3
129	부산시	좌천점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43
130	부산시	서대신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17-1
131	부산시	모라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16
132	부산시	부산금곡점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22

연번	지역	점포명	소재지
133	부산시	부산만덕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234 번길 47
134	부산시	부산센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35	부산시	부전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136	부산시	메트로시티점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 1005-201
137	부산시	광안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25
138	부산시	토곡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26
139	부산시	부산용호점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140	부산시	부산대연점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길 194
141	부산시	부산연제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로 10
142	부산시	문현점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 66
143	부산시	부산좌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3
144	부산시	부산정관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395
145	부산시	좌동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78
146	부산시	좌동 2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33
147	서울시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45
148	서울시	서울불광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21
149	서울시	응암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47
150	서울시	강서사옥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본사사옥 8 층
151	서울시	신사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0
152	서울시	상암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
153	서울시	북가좌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112
154	서울시	송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7
155	서울시	도화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8 길 72, 상가
156	서울시	명륜 2 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3 길 5
157	서울시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2 길 4
158	서울시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52
159	서울시	광화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160	서울시	보문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61
161	서울시	신당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22
162	서울시	명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7
163	서울시	삼선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6
164	서울시	옥수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71
165	서울시	면목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57
166	서울시	금호 2 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102
167	서울시	왕십리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33
168	서울시	서울회기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0
169	서울시	태릉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 길 35
170	서울시	망우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 494
171	서울시	금호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6
172	서울시	한남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01
173	서울시	길음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3 길 22
174	서울시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175	서울시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25, B-101
176	서울시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01
177	서울시	상계장암점	서울특별시 노원 상계 1313-4
178	서울시	풍납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1 길 30

연번	지역	점포명	소재지
179	서울시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천호수로 133
180	서울시	길동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86
181	서울시	거여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12
182	서울시	중곡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14
183	서울시	송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30 길 6
184	서울시	개롱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10
185	서울시	성내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38
186	서울시	암사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4 길 50
187	서울시	삼전역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9, 9-19 지하 1 층
188	서울시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45 길 10-25
189	서울시	반포 2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190	서울시	서래마을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23
191	서울시	학동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6
192	서울시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338
193	서울시	남성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194	서울시	봉천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46
195	서울시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5
196	서울시	도곡 2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 길 9
197	서울시	압구정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6 길 5-2
198	서울시	대치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50
199	서울시	목동 2 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172
200	서울시	등촌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1 길 56
201	서울시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53
202	서울시	신정 3 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53
203	서울시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5-1
204	서울시	강서점(E)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101
205	서울시	발산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 수명로 68-35
206	서울시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207	서울시	신정 2 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 길 23
208	서울시	오목교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96(신정동 86-1)
209	서울시	도림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75
210	서울시	신길 3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69 가길 12
211	서울시	신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212	서울시	가산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06, 112
213	서울시	개봉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19, 101
214	서울시	신길 2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64
215	서울시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43
216	서울시	서울오류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295
217	서울시	대방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4
218	울산시	명촌점	울산시 북구 명촌 10 길 3 번
219	울산시	울산방어점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47
220	울산시	울산매곡점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330-2
221	인천시	인천마전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70
222	인천시	인천경서점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4
223	인천시	인천당하점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67 번길 14
224	인천시	인천청라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86 번길 22

연번	지역	점포명	소재지
225	인천시	인천중앙점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93
226	인천시	연희점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51
227	인천시	인천굴현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길 3
228	인천시	주안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42
229	인천시	구월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98
230	인천시	인천송도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231	인천시	부개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73
232	인천시	인천부개역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87
233	인천시	인천논현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2
234	인천시	인천논현 2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35
235	인천시	인천한화점	인천광역시 남동 에코중앙로 156 번길 5-9
236	충남	천안쌍용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28
237	충남	천안신방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19
238	충남	천안불당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4 로 39-38
239	충남	아산배방점	충청남도 아산 배방읍 배방로 57-20
240	충남	엄사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26
241	충북	청주개신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신로 45
242	충북	청원오송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 로 184-6 번지
243	충북	금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92 번길 41
244	충북	수곡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2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4년 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248,82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Finance System Sale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지제한 것 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익스프레스 운영팀(대표전화 02-3459-8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립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homeplusexpress.com>) 또는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1.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6 기 2024년 02월 29일 현재

제 25 기 2023년 02월 28일 현재

제 24 기 2022년 02월 28일 현재

홈플러스주식회사

(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2. 2021년, 2022년, 2023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6 기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
제 25 기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제 24 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홈플러스주식회사

(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내·외장공사, 설비·집기·영업비품, 소모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첨 2.의 내역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개별점포의 여건에 따라 세부항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